

인천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가단2246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전 문

원고A

피고1. B

2. 한국농어촌공사

3. C

4. D

5. E

6. F

변론 종결2016. 9. 7.

판결 선고2016. 10.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2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76. 9. 29. 접수 제6868호로 마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2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3. 30. 접수 제7322호로 마친, 피고 C은 별지 2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2. 20. 접수 제31932호로 마친, 피고 D은 ① 별지 2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 7. 2. 접수 제9802호로 마친, ② 별지 2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8. 14. 접수 제13430호로 마친, 피고 E은 별지 2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9. 14. 접수 제26253호로 마친, 피고 F은 별지 2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9. 14. 접수 제2625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였으나 분배되지 않았으므로, G 혹은 G를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해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처분하였고, 피고들은 대한민국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별지3, 4 목록 기재와 같이 순차로 환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 (1) 원고의 부친 G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H'와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 (2) 가사 위법에 따른 농지상환절차가 완료되지 못하여 소외 대한민국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전소유권자들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기간 위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전소유권자들은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 부친 망 G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부친 망 G의 한자 성명이 구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명의인의 한자 성명과 동일하고, 원고 부친 망 G의 본적과 구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명의인의 주소가 모두 '경성부 I'일 뿐 아니라 원고의 출생지 및 원고 부친 망 G의 사망지가 모두 위 주소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부친 망 G는 위 주소지에서 위와 같이 사망할 당시까지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외 그 무렵 위 지역에 동명이인의 G가 존재한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 부친 망 G와 구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의 등기부 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등기부 취득시효 여부 피고 B는 1976. 5. 13. 인천 강화군 J 답 1,538평을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1976. 9. 29.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68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토지가 1978. 강화군 K 답 8,064m²로 환지된 사실, 위 환지된 토지에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마치고 이를 점유하다가, 위 토지가 2007. 2. 14. 인천 강화군 L 답 10,073.3m²로 다시 환지된 사실, 피고 B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별지 2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등기부 취득시효 여부 소외 M은 1951. 4. 8.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2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고, 196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 농어촌공사는 M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N, O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2016.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M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1975. 6. 30.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농어촌공사는 이를 순차적으로 승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농어촌공사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 C의 등기부 취득시효 여부 소외 P가 소외 Q로부터 별지 2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환지 전 토지들을 매수하여 1989. 3.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 P가 사망하여 2013. 4. 19. P의 상속인인 R 외 10인의 명의로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3. 12. 20. 피고 C이 임의경매를 통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P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1999. 3. 25.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순차적으로 승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피고 D의 등기부 취득시효 여부 소외 S이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2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의 환지 전 토지들을 매수하여 1980.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각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 D은 1993. 7. 2. S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S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위 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1990. 8. 14.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D은 이를 승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5) 피고 E, F의 등기부 취득시효 여부 소외 T이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2목록 제6항 기재 각 토지의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여 1976.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U는 1990. 9. 13. T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 E, F은 2010. 9. 14. U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U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위 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2000. 9. 13.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E, F은 이를 승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E, F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성용

별지